
지방자치단체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 구축 및 운영규정

2013. 4



전 자 정 부 국
정보자원기반과

목 차

▣ 제1장 총칙	1
----------------	---

▣ 제2장 통합관제센터의 구축	3
------------------------	---

▣ 제3장 통합관제센터의 운영	5
------------------------	---

<첨부> 지방자치단체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 구축 및 운영 규정 해설서	9
---	---

지방자치단체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 구축 및 운영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의 구축·운영 등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준수해야 할 기준 및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영상정보처리기기”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치로,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에서 통합 관리하는 기기에 한한다.

가.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 Closed Circuit Television)이란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된 카메라를 통하여 사람 또는 사물 등을 촬영하거나 촬영한 영상정보를 유·무선 폐쇄회로 등의 전송로를 통하여 특정 장소에 전송하는 장치 또는 촬영되거나 전송된 영상정보를 녹화·기록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

나. “네트워크 카메라(Network Camera)”란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된 기기로 촬영한 영상정보를 그 기기를 설치·관리하는 자가 유·무선 인터넷을 통하여 어느 곳에서나 수집·저장 등의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

2. “영상정보”란 특정 목적을 위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촬영하여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되는 모든 영상을 말한다.
3. “영상정보처리기기 시스템”이란 현장에 설치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이용하여 수집한 영상을 통합관제센터로 전송하여 관제하고 처리하는데 필요한 제반 시스템을 말한다.
4.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리”란 기관 내 또는 기관 간에 영상정보처리기기의 효율적 관리 및 정보연계 등을 위하여 목적별로 설치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물리적으로 통합하여 지정된 별도의 공간에서 관리 및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5. “영상정보 연계”란 통합관리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해 수집된 영상정보를 통합관제센터와 송·수신 하는 것을 말한다.

6.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란 생활 안전, 법규위반 단속, 시설물 관리 등 공공목적을 위해 설치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지정된 별도의 공간에서 통합관리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이용하여 각종 사건·사고 예방 및 사후조치 등의 기능을 수행 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이하 “통합관제센터”라 한다.)
7. “통합관제센터의 장”이란 통합관제센터의 구축·운영 및 영상정보 수집·이용·제공 등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지방자치단체가 구축·운영하는 통합관제센터의 운영 및 이를 통해 수집·이용·제공되는 영상정보 관리 등에 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사항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영상정보의 수집·이용·제공)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영상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등에 관해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시행규칙, 표준개인정보보호지침 등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목적에 부합하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영상정보를 수집하여야 하고, 설치목적을 정보주체가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수집된 영상정보는 그 목적 이외의 용도로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②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영상정보 열람청구권 등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제2장 통합관제센터의 구축

제5조(통합관제센터의 구축)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제를 위하여 독립된 공간으로 통합관제센터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통합관제센터 구축 시 개별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시스템을 통합하여야 하며, 통합된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영상을 확인할 수 있도록 연계 하여야 한다.

③통합관제센터의 장소와 시설은 향후 확장성을 고려하여 구축하여야 한다.

제6조(통합관리를 위한 영상정보처리기기 등의 설치 기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통합관리를 위해 다른 법령 또는 관계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설치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영상정보처리기기의 통합운영 및 관리가 가능하고, 설치목적에 맞는 제품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2. 영상정보처리기기의 통합운영 및 관리가 가능한 영상정보처리기기 시스템으로 구축하여야 한다.

제7조(의견수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통합관리로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이 변경 또는 추가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관계 전문가, 이해관계인,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다만 근접 장소에 동일 목적으로 단순히 추가 설치하는 경우에는 의견수렴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제8조(안내판의 설치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통합관리로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이 변경 또는 추가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4조 및 표준 개인정보보호 지침 및 고시 제43조 규정에 따라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9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통합·연계)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6조에 따라 설치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합관제센터로 통합·연계하여야 한다.

②영상정보처리기기를 교체 또는 신규로 설치하는 경우에도 제1항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통합·연계에 따른 효율성이 현저히 떨어지거나 국가보안 등 특수 목적인 경우에는 통합·연계하지 않을 수 있다.

제10조(전담부서의 지정)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통합관제센터의 구축·운영, 영상정보처리기기의 통합·연계 및 영상정보의 효율적 관리 등을 위하여 반드시 전담부서를 지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제11조(인력 확보 등)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통합관제센터 운영 등에 필요한 일반직·경찰직 공무원과 전문성을 보유한 관제요원을 확보하여 근무하게 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관제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③경찰서장은 방법용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영상정보자원 관리 및 각종 사건·사고의 신속한 대응을 위해 소속기관의 경찰공무원을 통합관제센터에 근무하게 하여야 하며, 방법용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관리 및 유지보수에 필요한 예산을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하여야 한다.

④교육감은 통합관제센터와 연계된 학교 내 영상정보처리기기의 관제를 위해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12조(통합관제센터 간 상호운용성 확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통합관제센터 간 영상정보의 효율적 연계를 위하여 상호운용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3장 통합관제센터의 운영

제13조(통합관제센터의 역할) ①통합관제센터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관제기능을 통합·연계하고 실시간 관제 등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범죄 및 재난·재해 발생 등 긴급상황 시 유관기관과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4조(통합관제센터의 운영·관리 방침 수립)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통합관제센터의 운영·관리 방침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25조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에 포함하여 수립한 경우 별도의 방침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통합관제센터의 구축 목적 및 운영 방향
2. 통합관제센터에 통합·연계한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각종 장비 현황
3. 전담조직 및 기능, 담당업무, 근무체계
4.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책임자, 운영시간, 실시간 관제의 범위 등) 및 영상정보 관리 방안
5. 통합관제센터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연계한 다른 기관과의 대응체계 수립
6. 통합관제센터 및 영상정보 보안(출입통제, 접근권한, 물리적·기술적·관리적 보안) 등에 관한 사항
7. 통합관제센터 내에서 수집되는 영상정보의 이용·제공 등에 관한 사항
8.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9. 운영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

제1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조작 및 기능)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목적과 관계없는 영상정보의 수집을 위해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회전·확대기능 등을 설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는 경우 음성정보를 수집하여 저장하는 기능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어린이, 여성, 노약자의 긴급구호나 범죄예방 등 위급상황 발생 시 긴급조치를 위해 영상정보처리기기 옆에 별도의 비상통신수단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6조(관제의 범위) 통합관제센터의 장은 통합관제센터에 전송되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영상을 실시간 관제하여야 한다. 다만 실시간 관제를 통하여 신속한 조치가 특별히 요구되지 않는 영상정보처리기기에 대하여는 해당 부서 및 기관과 협의를 통하여 그러하지 않을 수 있다.

제17조(권한의 수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경찰서, 교육기관 등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다른 기관이 설치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합관제센터에 통합·연계·관제하는 경우에는 다른 기관으로 부터 권한을 수임 받아 총괄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통합관제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당해 기관과 협의하여 운영에 관련된 사항을 조정할 수 있다.

제18조(관제요원의 근무) ①관제요원의 근무는 실시간 관제가 가능하도록 배치하고, 교대근무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내부 환경에 따라 탄력적으로 근무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②근무조건 등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관계 법률이 정한 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관제요원이 근무 중 영상정보처리기기로 범죄·사고·재난·재해 등을 발견한 경우, 해당기관 및 업무부서에 신속히 통보하여 대응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9조(출입자 통제 등)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통합관제센터를 운영하는 경우 이를 출입통제(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업무담당자 외의 출입을 엄격히 관리하여야 한다.

②업무담당자 외에 통합관제센터를 방문·출입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근무자의 근무 교대 시 근무자 및 방문 출입자에 대한 보안 검색을 실시하여 영상정보 자료가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④일반인이 견학 등 목적으로 통합관제센터를 방문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적절한 보안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0조(다른 기관과 연계에 필요한 보안대책)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경찰서 등 다른 기관과 시스템 연계에 필요한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21조(운영위원회 설치·운영 등)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통합관제센터의 원활한 업무 지원 및 영상정보 보호 등을 위해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안전한 통합관리를 위한 운영·관리 방침 마련, 심의
2. 통합관리 예산 또는 인력 협의
3. 통합 관리되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관제요원 선발 시 자격 기준 심의

4. 그 밖에 통합관리에 필요한 사항 심의·조정 등

- ③제1항에 따른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한다.
- ④당연직 위원은 관할 지방경찰서 담당과장, 초등학교 연계를 실시한 경우 관할 교육청 또는 교육 지원청 담당 국·과장으로 한다.
- ⑤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한 자로 구성한다.
 - 1. 주민의 권익신장을 위해 활동하는 지역 내 시민사회 단체 또는 소비자단체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 2. 지방의회 해당 상임위원회 또는 의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 3. 그 밖에 영상정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관계 전문가 또는 공무원
-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 ⑥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2조(통합관계센터 운영업무 등의 위탁)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통합관계센터 관제 및 유지보수업무 등을 직접 수행하거나, 외부에 위탁할 수 있다. 다만 운영업무 전체는 위탁할 수 없다.

- ②제1항에 따라 통합관계센터의 관제 및 유지보수 업무 등을 위탁하려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추진하여야 한다.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관리·운영에 대한 점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현황 등을 파악하고, 표준 개인정보보호 지침 및 고시 제52조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에 대한 자체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24조(교육의무)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통합관제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영상 정보처리기기의 운영 및 관제요원에 대해(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제반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은 자체적으로 실시하거나 해당 분야의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 이 규정은 접수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규정의 활용)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통합관제센터 구축 및 운영에 대하여 동 규정의 해설서를 준수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 구축 및 운영 규정 해설서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의 구축·운영 등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준수해야 할 기준 및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이 규정은 지방자치단체가 소관 부서별로 설치·운영하고 있는 영상정보처리기기시스템을 보다 효과적이고 체계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통합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이하 ‘통합관제센터’라 한다)”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다.
2. 이에 따라 이 규정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통합관리에 따른 의견수렴, 안내판 설치 등 통합관제센터 구축에 관한 사항과 통합관제센터 운영·관리 방침 수립, 운영위원회 설치·운영, 통합관제센터 운영업무 등의 위탁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 개념도 >

통합관제센터 개념도



통합



경찰, 관제인력 합동근무

통합관제센터 하드웨어	통합관제 솔루션	기반시설	사무공간	운영조직
영상/음향장비 서버/운영PC 스토리지 네트워크/보안시스템	통합관제메인솔루션 저장분배솔루션 통합모니터링솔루션 GIS모니터링솔루션	출입통제시스템 공조시설 전기설비 소방설비	관제실 장비실 회의실 기타공간	총괄부서 운영부서 유관기관 유지보수인력

<통합관제센터 시스템 구성도>



제3조(적용범위) 지방자치단체가 구축·운영하는 통합관제센터의 운영 및 이를 통해 수집·이용·제공되는 영상정보 관리 등에 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사항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본 규정의 적용범위는 지방자치단체의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를 통해 수집·이용·제공되는 영상정보의 처리 및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

<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관련 타 법령 현황 >

- ◆ 「개인정보 보호법」 제 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 ◆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 24조(보행자 안전을 위한 영상정보처리기기 등의 설치)
-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개인정보의 이용 제한) 및 같은 법 제28조의 2(개인정보의 누설금지)
- ◆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시설 및 설비기준) : 목욕실·발한실 및 탈의실 시설에 무인감시카메라(CCTV)를 설치할 수 없음
- ◆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노외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 ◆ 「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4조(카지노업의 영업에 관한 제한 등)
- ◆ 「관광진흥법」 제28조(카지노 사업자 등의 준수 사항)
- ◆ 「아동복지법」 제32조(아동보호구역에서의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 등)
-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0조의6(영상정보처리기기의 통합 관제)
- ◆ 국회에서의 중계방송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폐쇄회로 시스템)
- ◆ 외국인 보호규칙 제37조(안전대책)
- ◆ 지하공공보도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2조(부대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
-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2조(공사의 범위) 별표 1 “공사의 종류”
- ◆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제5조(산림보호구역에서의 사업허가·신고 등)
- ◆ 「접지설비·구내통신설비·선로설비 및 통신공동구등에 대한 기술기준」

제4조(영상정보의 수집·이용·제공)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영상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등에 관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시행규칙, 표준 개인정보보호 지침 및 고시 등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목적에 부합하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영상정보를 수집하여야 하고, 설치목적에 정보주체가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수집된 영상정보는 그 목적 이외의 용도로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②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영상정보 열람청구권 등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제2항 관련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목적에 부합하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영상정보를 수집하여야 하고, 설치목적에 정보주체가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영상정보의 수집은 법률에 그 근거가 규정되어 있거나 당사자인 정보주체의 명시적 동의를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금지 한다.

< 관련 사례 >

- ◆ 장애인 재활 복지시설인 ○○ 회관이 불법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해 회관 운영 방식에 비판적인 직원들의 움직임을 촬영해 소송 증거로 사용

제3항 관련

- 수집된 영상정보는 그 목적 이외의 용도로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②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법률 근거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개인 정보의 이용·제공 제한)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경우는 공공기관의 경우로 한정한다.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 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5.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6.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7.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8.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9.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4항 관련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영상정보 열람청구권 등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2. 정보주체가 자신의 영상정보에 대하여 적극적인 통제권을 행사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영상정보에 대한 침해 우려가 있는 경우에 정보주체가 스스로 이를 확인하고 열람하는 것을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열람청구권 등을 규정하였다.

가. 정보주체는 자신의 영상정보가 수집·처리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거나 해당 영상정보에 대한 열람 또는 파기를 요청할 수 있다.

나. 다만, 표준 개인정보보호 지침 및 고시 제 48조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수 있다. 이때에는 거부사유를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정보주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법률
근거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①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처리하는 자신의 개인정보 열람을 요구 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기관에 대하여는 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대상이 되는 개인정보 파일 중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요구할 수 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

①제35조에 따라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한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그 개인정보의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다.

개인정보보호법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 정지 등)

①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하여 자신의 개인정보 처리의 정지를 요구할 수 있다.

제5조(통합관제센터의 구축)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제를 위하여 독립된 공간으로 통합관제센터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통합관제센터 구축 시 개별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시스템을 통합하여야 하며, 통합된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영상을 확인할 수 있도록 연계 하여야 한다.

③통합관제센터의 장소와 시설은 향후 확장성을 고려하여 구축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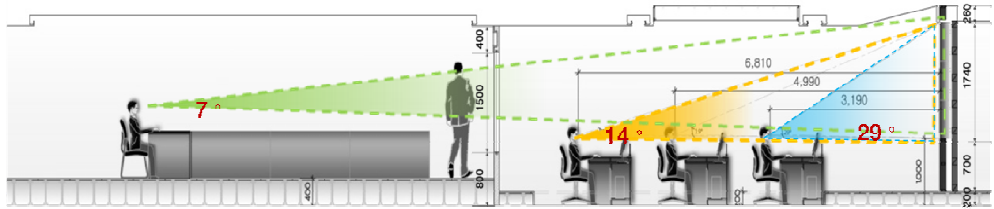
1. 통합관제센터는 청사 내·외부, 신축 또는 임대 건물 등을 활용하여 장소를 확보하여야 한다.
2. 공간구조는 효율적인 통합관제센터의 기능유지와 운영인력의 업무환경 제공을 위한 독립공간으로 구성 한다.
3. 통합관제센터는 관제실, 장비실, 회의실, 운영실, 휴게실, 사무실 등으로 구성한다.
 - 가. 영상정보처리기기 영상을 모니터링 하는 관제실과 전산장비가 구축되는 장비실로 구성
 - 나. 필요에 따라 회의실, 운영실, 휴게실, 사무실 등을 추가적으로 구성
 - 다. 관제실과 연결된 회의실은 상황발생시 유관 기관과의 업무회의가 가능

< 통합관제센터 면적 산정기준 >

구분	내용	비고 (1인당 설계 면적기준)
사무 공간	- 사무실에 적용 - 근무인원에 대하여 1인당 필요면적을 곱하여 산정	실(국)장 : 38.88㎡ 담당(계장) : 7.65㎡ 직원 : 7.2㎡
관제 공간	- 상황실 또는 정보통신실에 적용 - 장비 및 설비의 구축 면적 산정 - 통합관제센터의 기능 및 역할에 따라 가변적임	
기타 공간	- 회의실, 휴게실 등의 공간에 적용 - 지방청사·종합회관의 표준 설계 면적 산정 기준 적용	

- ① 관제실 : 영상정보처리기기 영상 모니터링을 위한 통합관제 공간으로 효율적 관제운영을 위한 데스크 및 전면 시야각을 고려한 영상표출 시스템이 있는 공간

< 관제실 내용 및 고려사항 >

구분	내 용	고려사항
관제실	◦ 상황 관제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편안 하고 안정된 공간배치 ◦ 근무자의 근무환경에 맞는 콘솔데스크 제작	◦ 상황판의 크기 및 높이 고려 ◦ 근무자 인원수를 고려한 상황판과의 거리설정 ◦ 근무자의 피로감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조명 배치와 조도 계획 고려 ◦ 근무자의 시야각을 고려한 이중마루 층고 구성 ◦ 방음 및 흡음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공간구성 ◦ 관제실의 근무인원
	◦ 후방 근무자의 시야 확보를 위하여 이중마루 층고의 차이를 두어 설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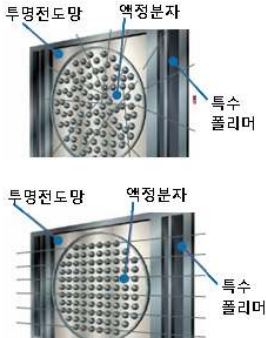
② 장비실 : 서버 및 스토리지, 향온향습기, 자동소화장치 등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는 공간

< 장비실 내용 및 고려사항 >

구분	내 용	고려사항
장비실	◦ 장비실 서버 및 스토리지 상황판 등에 대한 효과적인 온도관리 및 유지보수를 위한 공간배치 ◦ 표준 랙 기준으로 설계구성(표준 랙 : 19" 높이 2200mm, 깊이 1000mm)	◦ 향후 확장을 고려한 장비실 공간 고려 (가로 확장형 공간구성 등)  ◦ 스토리지 랙과 같이 큰 규모의 랙도 고려하여 장비실 폭 설계 ◦ UPS 배전반 향온 향습기 배치 고려 ◦ 정전시 UPS를 사용하여 장비 지속시간 고려 (예: 80kVA-30분) ◦ 장비 보안을 위하여 출입보안시스템 구성

③ 회의실 : 상황발생시 관제실의 영상을 보며 공동 대책회의가 가능한 공간

< 회의실 내용 및 고려사항 >

구분	내 용	고려사항
회의실	- 관제실과 회의실 간에는 미라클 글라스 또는 유리& 블라인드 구축 - 회의실에는 기존 영상회의 시스템이 이설시 구성이 용이하도록 네트워크 및 음향 배선 구성	- 프로젝터와 미라클 글라스의 스크린기능으로 효과적인 회의 진행 - 전면 관제실 보다 높은 이중 마루 구성으로 관제실 보기가 용이하도록 구성
	통합관제센터 회의실에 구축되는 미라클 글라스는 전원이 인가될 경우, 두 장의 도전성 필름 사이에 액정(Liquid Crystal)과 고분자(Polymer)로 구성된 물질이 투명/불투명 상태로 변화 됨  	

4. 기타 공간 : 관제실, 장비실, 회의실 등의 통합관제센터의 필수공간을 제외한 운영실, 사무실 및 휴게실과 같은 공간으로 정의

< 통합관제센터 공간배치 내용 및 고려사항 >

구분	내용	고려사항
운영실	통합관제센터 내 장비 유지보수를 위한 공간	운영실은 장비실과 연결되도록 구성하고 출입통제 시스템 구축 고려
사무실	운영조직의 업무용 공간	통합관제센터 운용조직이 공동 근무를 위한 공간으로 청사와 떨어진 센터에서는 필수
휴게실	근무자의 편의를 위한 휴게 공간	휴게공간은 휴식용 의자 및 테이블로 구성되며 24시간 365일 근무의 특성에 따라 수면실 기능 제공 고려

5.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난 감시, 산불 감시, 학교 내 영상정보처리기기 등 개별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시스템을 통합할 경우 기 용도 영상정보처리기기의 모든 영상을 확인할 수 있도록 구축하여야 한다.

가. 기 구축되어 운영 중인 시스템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나. 기기의 기술적 특성을 고려하여 통합작업을 하여야 한다.(예:아날로그장비 →디지털장비)

다. 관제센터 통합을 위해 필요한 예산은 협의를 통해 확보하여야 한다.

6. 통합관제시설 구축을 계획할 때에는 향후 확장에 대비해 충분한 공간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한다.

가. 통합관제센터를 구축하는 경우 향후 확장성을 고려하여 예비배관 및 선로를 확보하여야 한다.(구내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제28조 준용)

나. 통합관제센터는 향후 유지보수에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 향후 확장성 및 기능개선을 고려하여 사용 S/W, program 등 매뉴얼을 구비하여야 한다.

7. 기타 세부내용은 통합관제센터 구축 가이드라인('13.2월) 참조

제6조(통합관리를 위한 영상정보처리기기 등의 설치 기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통합관리를 위해 다른 법령 또는 관계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설치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영상정보처리기기의 통합운영 및 관리가 가능하고, 설치목적에 맞는 제품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2. 영상정보처리기기의 통합운영 및 관리가 가능한 영상정보처리기기 시스템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1. 영상정보처리기기 시스템은 향후 통합관제센터에서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IP기반 영상정보처리기기 시스템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반드시 해당 영상정보처리기기 시스템의 확장성과 호환성을 제공할 수 있는 기술적인 문서(지침서, 매뉴얼)와 파일(SDK, 기타 개발도구)들을 확보하여야 한다.
2. 영상정보처리기기 시스템은 케이블 등 통신설비와 연결 및 각종 제어설비가 결합되는 시스템이므로 반드시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업체가 설계·시공 및 유지보수 등을 하여야 한다.
3. 영상정보처리기기 시스템은 이용자의 안전과 영상정보의 원활한 제공 및 당해 설비의 증설 등에 지장이 없고 유지·관리가 용이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4. 주·야간 구분 없이 최적의 영상을 제공할 수 있도록 조도를 확보하여야 한다.

**법률
근거**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공사업의 등록 등)

- ① 공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공사업을 등록한 자는 제15조에 따른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을 3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끝날 때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③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등록을 받았을 때에는 등록증과 등록수첩을 발급한다.

< 카메라 기능 및 성능 기준 예시 >

항목	내용
화소수	- (41만화소) 10m이내 사람과 사물에 대해 식별이 가능하나 영상의 확대가 곤란하여 촬영대상이 명확한 장소만 제한적으로 설치 - (41만화소+줌) 줌기능을 활용하면 30m이내 사람과 사물에 대하여 광역 촬영이 가능하고 영상을 확대 저장 후 재생해도 식별가능 - (130만화소+줌) 고성능 렌즈에 줌기능이 있어 30m이내 사람과 사물의 고품질 촬영이 가능함으로써 다양한 용도로 활용가능
컬러	- 색상 정보가 필요한 경우 ※ 컬러 카메라 채택
줌	- 원거리 또는 감시 지역이 이동하는 경우 · 영상을 확대하는 줌 기능 채택 · 배율은 용도에 맞게 선정 - 방법용 카메라 · 카메라 설치 위치로부터 100m 지점의 얼굴을 인식 할 수 있어야 함
조도	- 지하 또는 주차장과 유사한 환경에 설치되는 경우 · 0.01Lux 이하 - 지상 또는 교통용과 유사한 환경에 설치되는 경우 · 1.0Lux 이하(메가픽셀인 경우) · 0.5Lux 이하(메가픽셀이 아닌 경우) - 주·야간 구분 없이 화상을 제공하여야 하되, 재생 시 식별가능한 수준의 화상을 제공 할 수 있어야 하며 설치 목적에 부합한 성능의 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며, 네트워크 카메라로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역광보정	- 출입구, 창문 등에 설치되는 경우 · 역광보정 기능 채택

제7조(의견수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통합관리로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이 변경 또는 추가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관계 전문가, 이해관계인,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다만 근접 장소에 동일 목적으로 단순히 추가 설치하는 경우에는 의견수렴을 하지 않을 수 있다.

1.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3조, 표준개인정보보호지침 및 고시 제42조 참조

제8조(안내판의 설치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통합관리로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이 변경 또는 추가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4조 및 표준 개인정보보호 지침 및 고시 제43조 규정에 따라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법률
근거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4조(안내판의 설치)

① 법 제25조제1항 각 호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는 자(이하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라 한다)는 영상정보처리기기가 설치·운영되고 있음을 정보주체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법 제25조제4항 본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건물 안에 여러 개의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출입구 등 잘 보이는 곳에 해당 시설 또는 장소 전체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지역임을 표시하는 안내판을 설치할 수 있다.

1. 설치 목적 및 장소
2. 촬영 범위 및 시간
3. 관리책임자의 성명 및 연락처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가 설치·운영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내판 설치를 갈음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게재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이 원거리 촬영, 과속·신호위반 단속 또는 교통흐름조사 등의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는 경우로서 개인정보 침해의 우려가 적은 경우
2. 산불감시용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는 경우 등 장소적 특성으로 인하여 안내판을 설치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안내판을 설치하더라도 정보주체가 쉽게 알아볼 수 없는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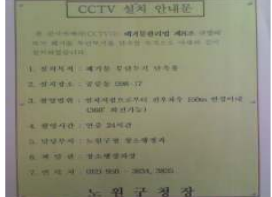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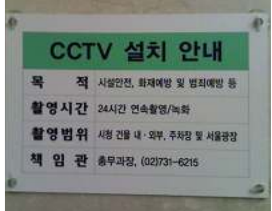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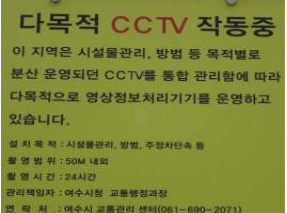
③ 제2항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에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게재할 수 없으면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공개하여야 한다.

1.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의 사업장·영업소·사무소·점포 등(이하 "사업장등"이라 한다)의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는 방법
2. 관보(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가 공공기관인 경우만 해당한다)나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의 사업장등이 있는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이상의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다목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일반일간신문, 일반주간신문 또는 인터넷신문에 실는 방법

④ 법 제25조제4항 단서에 따라 공공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에 설치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에 대해서는 안내판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군사시설
2. 「통합방위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국가중요시설
3. 「보안업무규정」 제36조에 따른 보안목표시설

<안내판 설치 예시>

구분	안내판 및 홈페이지 게재 내용		
방범용			
쓰레기 투기 방지			—
시설물 관리			
주차 관리			
교통 정보 수집			—
재난· 화재 감시용		—	—
다목적용		—	—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④제1항 각 호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는 자(이하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라 한다)는 정보주체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내판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통합·연계)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6조에 따라 설치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합관제센터로 통합·연계하여야 한다.

②영상정보처리기기를 교체 또는 신규로 설치하는 경우에도 제1항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통합·연계에 따른 효율성이 현저히 떨어지거나 국가보안 등 특수 목적인 경우에는 통합·연계하지 않을 수 있다.

1. 지방자치단체에서 부서별·목적별로 설치·운영 중인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합관제센터에 통합하고 연계하여야 한다.
2. 영상정보처리기기를 교체하거나 추가 설치할 경우 신속한 상황 대처와 효율적인 관제를 위하여 통합관제센터에 연계하여야 한다.
 - 가. 각종 범죄, 사건·사고 시 방범용 등 다용도로 활용가능토록 연계 관리할 수 있다.
 - 나. 주정차 단속 영상정보처리기기의 경우, 업무시간 외에는 방범용으로 전환·연계 관리할 수 있다.
 - 다. 재난·재해 등 비상시에는 재난·재해용으로 활용 가능한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연계하여 관리할 수 있다.
 - 라. 다만, 통합에 따른 효율성과 경제적 비용 등을 대비하여 효과가 현저히 떨어지거나 국가보안 등 특수상황인 경우에는 연계에서 제외할 수 있다.
3. 지방자치단체는 기 설치 운영 중인 영상정보처리기기 시스템을 완벽하게 연계하여 운영자가 원하는 방식으로 사용자 중심의 인터페이스 설계 및 시스템 운영의 편의성을 고려하여 다양하게 영상을 포출할 수 있어야 한다.

4. 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 표준개인정보보호지침 및 고시 제42조, 공공기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 제4조, 제5조 참조

제10조(전담부서의 지정)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통합관제센터의 구축·운영, 영상정보처리기기의 통합·연계 및 영상정보의 효율적 관리 등을 위하여 반드시 전담부서를 지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통합관제센터 구축·운영 및 영상정보의 이용·제공·삭제 등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전담부서를 지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2. 전담부서는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의 구축 및 유지보수 등 제반업무에 대한 협의 조정, 통합관제센터 구축·운영 업무,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 운영위원회 설치·운영, 영상정보 자원 관리 업무 등을 추진 한다.
3. 전담부서의 인력은 자체 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배치한다.

< 인력운영 방안 예시 >

담당업무	직종	인원
-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 기획 및 운영 - 영상정보처리기기 위원회 운영 -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체계 개선 대책 수립 시행 등	○○○	○명
- 영상정보 공개 요청에 따른 영상정보 승인 - 영상정보 보호 업무 - 영상정보 보호관련 교육 시행 -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영상정보 처리실태 점검 지원 등	○○○	○명
- 영상정보처리기기 신규설치에 대한 협의 조정 - 기존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및 유지관리 - 영상정보처리기기 기술표준화 지침 작성 -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시스템 개발 및 운영 등	○○○	○명

4.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전담부서의 총괄 책임자와 운영 책임자 등을 지정하여야 한다.

가. 개인정보관리책임관을 총괄책임자로 지정할 수 있다.

나. 운영책임자는 총괄책임자가 지정할 수 있다.

다. 총괄책임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 구축·운영, 영상정보자원의 수집·이용·제공 등 효율적 관리 및 통합관제센터 구축 등 업무 전반을 총괄 한다.

라. 운영책임자는 총괄책임자를 지원하면서 실질적인 업무를 수행 한다.

5. 총괄책임자와 운영책임자의 주요 역할은 다음과 같다.

구분	주요 역할
총괄책임자 (통합관제센터장)	-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및 관리 총괄 - 영상정보처리기기 영상정보 이용·제공·보호 등 총괄 -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위원회 구성·운영 총괄 - 통합관제센터 구축·운영 총괄 등
운영책임자 (분야별 책임자)	-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 영상정보처리기기 구매 및 유지보수 - 영상정보 안정성 확보 및 민원처리 -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위원회 지원 - 통합관제센터 구축·운영 지원 - 영상정보처리기기 관제요원 관리·감독 - 기타 총괄책임자 업무지원 등

6. 통합관제센터 운영조직은 총괄운영부서, 영상정보처리기기 관제부서, 시설관리 부서로 구성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여건에 따라 별도로 구성할 수 있다.

가. 총괄운영 부서 신설 또는 임시운영 조직팀(TF팀) 등으로 구성 가능

나. 운영부서는 “팀”, “과” 형태로 신설하거나 기존조직을 확장하여 구성 가능

7. 관제시설 및 관제요원 등은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 구축과 동시 이관

< 전담부서의 역할-예시 >

구 분	역 할
총괄운영 부서	- 영상정보처리기기 구매·설치 등 총괄 운영 및 사업계획 조정 -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 총괄 운영 및 사업계획 조정 - 관제요원 총원 및 관리·감독 총괄 -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위원회 구성·운영 - 각종 사건 사고 합동 대응 및 지령 전파 등
영상정보처리기기 관제 부서	- 영상정보처리기기 영상화면을 관제하여 이상 징후 등 감지 - 영상정보 검색, 각종 수사관련 요구자료 추적·지원 - 영상정보처리기기 관제요원 근무상황 관리 및 보안교육 실시 등
시설관리 부서	- 영상정보처리기기와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의 시설물 운영·유지관리 - 각종 장비 구매, 유지보수, 교육 및 기술 전수 등

제11조(인력 확보 등)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통합관제센터 운영 등에 필요한 일반직·경찰직 공무원과 전문성을 보유한 관제요원을 확보하여 근무하게 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관제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③경찰서장은 방범용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영상정보자원 관리 및 각종 사건·사고의 신속한 대응을 위해 소속기관의 경찰공무원을 통합관제센터에 근무하게 하여야 하며, 방범용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관리 및 유지보수에 필요한 예산을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하여야 한다.

④교육감은 통합관제센터와 연계된 학교 내 영상정보처리기기의 관제를 위해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지원하여야 한다.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통합관제센터의 운영·관리 총괄 등을 위해 일반직·경찰직 공무원과 관제요원을 확보하여 근무하게 하여야 하며, 관제 전문 인력과 장비를 확보한 민간업체에 영상정보처리기기의 관제를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가. 관제인력의 인력 산정은 1인당 50대의 모니터를 기준으로 할 수 있다.

나. 관제인력의 인건비 및 운영비용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담 한다.

다. 관제인력의 자격과 요건은 18세 이상의 공무원 채용에 준하는 자격을 갖춘 자로서 결격사유가 없는 자로 한다.

라. 관제업무 유경험자를 우선 선발할 수 있으며, 자격요건(신원조사 등)을 심사하여 선발하여야 한다.

마. 관내 거주하는 주민 및 장애인을 우선적으로 선발할 수 있다.

바.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 구축 이전에 관제 요원을 확보하고, 관제에 필요한 제반교육 및 모의훈련을 실시하여 전문성을 제고시켜야 한다.

2. 학교 내 영상정보처리기기의 관제와 방범용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영상정보자원 관리 및 각종 사건·사고의 신속한 대응을 위해 교육기관과 경찰서로부

터 인력과 예산을 지원받아 운영하여야 하며, 추가로 필요한 관제 전문요원은 내부 또는 외부채용을 통해 확보할 수 있다.

3. 관제요원에 대해서는 보안 각서 징구 및 영상정보 관련 보안 교육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4. 방법용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영상정보의 관제를 총괄할 수 있도록 경찰청으로부터 경찰공무원과 예산을 지원받아 운영하여야 한다.
5. 학교 내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영상 연계 시 지역교육청으로부터 관제 인력 및 예산을 지원받아 운영하여야 한다.

제12조(통합관제센터 간 상호운용성 확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통합관제센터 간 영상정보의 효율적 연계를 위하여 상호운용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1. 통합관제센터 상호운용성이란 통합관제센터 간 상호 확장 및 연계 운용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방안을 말한다.
2. 영상정보자원의 활성화를 위해 중앙정부, 공공기관, 광역 자치단체, 기초 자치단체 간 상호 운용성 확보방안에 따라 통합관제센터를 구축 한다.

※ 정보시스템 구축·운영기술지침(안행부 고시 2010-31호, ‘10.5.6) 기준

3. 통합관제시스템의 영상정보 운영 데이터베이스의 관리 기능이 제공되어야 한다.
4. 통합관제시스템 운영에 사용되는 네트워크는 안정성을 기반으로 확장성 및 보안성이 보장되도록 구축하여야 한다.
5. 하드웨어 이기종간 연계기능 및 특정기능을 수행하는 내장형 컴퓨팅 시스템 또는 주변장치는 해당 장치가 설치되는 정보시스템과 호환을 통한 확장이 가능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6. 통합관제시스템은 관리, 저장, 분배, 감시, 외부연동 등에 OS 및 운영 방법 등 표준화된 기술에 의하여 개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관련
근거**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기술 지침 제6조(플랫폼 및 기반구조 분야)

- ①데이터베이스는 관리 기능이 제공되어야 하며, 데이터베이스 관리자를 지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 ②정보시스템의 운영에 사용되는 네트워크는 안전성 및 확장성이 보장되도록 구축 운영하여야 한다.
- ③정보시스템 운영에 사용되는 통신장비는 IPv4와 IPv6가 동시에 지원되는 장비를 채택하여야 한다.
- ④하드웨어는 이기종간 연계가 가능하여야 하며,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임베디드 장치 및 주변장치는 해당 장치가 설치되는 정보시스템과 호환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제13조(통합관제센터의 역할) ①통합관제센터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관제기능을 통합·연계하고 실시간 관제 등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범죄 및 재난·재해 발생 등 긴급상황 시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신속한 합동대응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1. 통합관제센터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관제기능을 통합·연계하고, 전문 관제요원을 통한 실시간 관제 등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 통합관제센터 서비스 구성 >



2. 통합관제센터는 지역 특성에 맞는 관제업무를 통합·운영할 수 있어야 한다.

< 통합관제센터 서비스 운영업무 >

구분	정 의
기본 서비스 운영 업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목적별로 분류된 방법, 쓰레기투기방지, 주차관리, 주정차단속, 재난화재감시, 시설물 관리 등의 서비스에 대한 기본 통합 관제 제공 ※ 주차관리 서비스는 자치단체에 따라 그린파킹 서비스로 표현하기도 함 ※ 시설물 관리 서비스는 자치단체에 따라 청사관리 서비스로 표현하기도 함
확장 서비스 운영 업무	기본서비스를 중심으로 자치단체의 특성과 주민 요구에 따른 문화재 감시, 어린이지킴이, 독거노인 서비스 등에 대한 확장 통합 관제 기능
연계 서비스 운영 업무	유관기관 혹은 타 자치단체와의 교통관제 등을 포함한 연계 통합관제 제공 ※ 유관기관 : 교통정보센터, 소방서, 경찰서, 재난관제실, 기타기관

※ 자치단체 특성에 따라 통합관제센터에서 수용될 서비스의 운영업무 범위 결정

3. 기본서비스 운영 업무 :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목적별로 분류된 방법, 주정차단속, 주차관리, 쓰레기투기방지, 시설물관리, 재난화재감시 등의 서비스에 대한 기본 통합관제 제공

< 기본서비스 내용 >

구분	내 용
범위	- 시설물 관리, 재난화재 감시, 주정차 단속, 주차관리, 쓰레기투기방지, 방법 등 세부목적별 영상정보처리기기 서비스 수용
통합방안	- 기 설치된 목적별·부서별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정보(제품명, 제조사, 사용 프로토콜, SDK) 수집을 통해 통합
기대효과	- 분산 운영되고 있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의 통합을 통한 효율적인 운영·관리 - 통합 운영을 통한 비상상황 발생 시 신속한 조치 가능
개념도	

5. 확장 서비스 운영 업무 : 기본서비스를 중심으로 자치단체의 특성과 주민 요구에 따른 지역특화, u-투어, 독거노인서비스 등에 대한 확장 통합관계 제공

< 확장서비스 내용 >

구분	내 용
범위	- 기본 서비스 외에 자치단체의 목적에 따라 독자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서비스 수용 ※ 지역특화서비스, u-투어, 독거노인, 지하차도감시, 문화재감시, 어린이지킴이 등
통합방안	- 기본 서비스에서 활용중인 통합관계 솔루션을 기반으로 서비스 연동 - 해당 확장 서비스와 기본 서비스간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연동으로 실시간 모니터링 - 규정된 프로토콜을 통해 이벤트 감시 및 상황조치 - 지리정보시스템(GIS)내에 서비스별 데이터베이스 연동
기대효과	- 기본 서비스에 포함되어 있는 통합관계 솔루션과의 연동을 통한 효율적 운영관리와 구축비용 절감 - 분산 또는 별도 운영되고 있는 시스템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 - 통합 운영을 통한 비상상황 발생 시 신속한 조치 가능 - 자치단체 특화 서비스 제공을 통한 주민 만족도 상승
개념도	

6. 연계서비스 운영 업무 : 기타 기관, 소방서, 경찰서, 교통정보 센터, 재난 관제실 등을 연계한 통합 관제를 기반으로 상호 운용성 제공

< 연계서비스 내용 >

구분	내 용
범위	- 기본 서비스와 확장 서비스를 포함한 유관기관과의 연계 서비스 ※ 기타기관, 소방서, 경찰서, 교통정보센터, 재난관제실, 인접 자치단체 간 연계 등
통합방안	- 통합관제의 서비스를 표준 프로토콜 연동을 통해 상호 운용성 확보 - 목적, 기능에 따라 별도로 운영되는 서비스를 협약을 통해 상호 연계 - 영상회의 등을 통한 업무적 연계 운영 - 유관기관에 영상연동을 위한 네트워크 연동 및 운영자 PC, 접속권한 추가
기대효과	- 기본 서비스와 확장 서비스에 포함되어 있는 통합관제 솔루션과의 연동을 통한 효율적 운영관리와 구축비용 절감 - 상호 운용성 확보 기반으로 다양한 대 국민서비스 제공 - 유관기관 간 신속한 대응 등 시너지 창출
개념도	

7. 기타 세부내용은 통합관제센터 구축 가이드라인('13.2월) 참조

제14조(통합관제센터의 운영·관리 방침 수립)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통합관제센터의 운영·관리 방침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25조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에 포함하여 수립한 경우 별도의 방침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통합관제센터의 구축 목적 및 운영 방향
2. 통합관제센터에 통합·연계한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각종 장비 현황
3. 전담조직 및 기능, 담당업무, 근무체계
4.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책임자, 운영시간, 실시간 관제의 범위 등) 및 영상정보 관리 방안
5. 통합관제센터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연계한 다른 기관과의 대응체계 수립
6. 통합관제센터 및 영상정보 보안(출입통제, 접근권한, 물리적·기술적·관리적 보안) 등에 관한 사항
7. 통합관제센터 내에서 수집되는 영상정보의 이용·제공 등에 관한 사항
8.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9. 운영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

**법률
근거**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⑥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는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 되지 아니하도록 제29조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호 통합관제센터의 구축 목적 및 운영 방향

1. 규정 제13조 해설서 참조

제2호 통합관제센터에 통합·연계한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각종 장비 현황

1. 규정 제9조, 제23조 참조

제3호 전담조직 및 기능, 담당업무, 근무체계

1. 규정 제10조, 제11조, 제18조 참조

제4호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책임자, 운영시간, 실시간 관제의 범위 등) 및 영상정보 관리 방안

1. 규정 제10조 해설서 참조

제5호 통합관제센터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연계한 다른 기관과의 대응체계 수립

1. 규정 제12조, 제13조 2항, 제16조 해설서 참조

제6호 통합관제센터 및 영상정보 보안(출입통제, 접근권한, 물리적·기술적·관리적 보안) 등에 관한 사항

1. 표준개인정보보호 지침 및 고시 제51조 참조

제7호 통합관제센터 내에서 수집되는 영상정보의 이용·제공 등에 관한 사항

1. 표준개인정보보호 지침 및 고시 제44조, 제45조, 제46조 참조

2.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영상정보를 수사나 재판 자료로 제공하는 경우, 기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집 후 최소 30일 이상 지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판단에 따라 삭제할 수 있다.

법률
근거

개인정보보호법 제21조(개인정보의 파기)

①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를 파기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해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경찰 등 유관기관에 제공된 영상정보는 그 목적이 종료된 즉시 반환하도록 하여야 하며, 반환된 영상정보는 반드시 삭제하여야 한다.

4. 영상정보의 제공 내용·회수 및 삭제사항 등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5. 영상정보가 누설되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이용되는 경우에는 심각한 프라이버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영상정보를 취급하거나 취급하였던 자에게 비밀유지 의무를 부과하였다.

6. 영상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영상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영상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라 함은 현재 영상정보를 처리하는 자, 과거에 영상정보를 처리하였던 자 및 영상정보 취급자로부터 영상정보 처리기기의 설치·관리를 위탁받아 해당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를 포함하며, 정규직원에 한하지 않고 계약 직원 및 임시직원까지도 포함 한다.

나. “영상정보의 누설”이라 함은 영상정보를 타인에게 알리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알리는 방법에는 제한이 없으므로 부작위에 대한 누설도 포함 된다.

7.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영상정보를 처리하는 자에 대한 업무의 인수·인계를 철저히 관리 감독하여야 하며, 영상정보를 처리하였던 직원에 대해서는 비밀유지 의무 등에 대한 서약서를 반드시 징구하여야 한다.

법
률
근
거

개인정보보호법 제59조(금지행위)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1. <생 략>
2.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
3. <생 략>

제8호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1. 규정 제22조 해설서 참조

제9호 운영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

1. 규정 제21조 해설서 참조

제1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조작 및 기능)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목적과 관계없는 영상정보의 수집을 위해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회전·확대기능 등을 설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는 경우 음성정보를 수집하여 저장하는 기능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어린이, 여성, 노약자의 긴급구호나 범죄예방 등 위급상황 발생 시 긴급조치를 위해 영상정보처리기기 옆에 별도의 비상통신수단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공공기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 제3조 참조

제16조(관제의 범위) 통합관제센터의 장은 통합관제센터에 전송되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영상을 실시간 관제하여야 한다. 다만 실시간 관제를 통하여 신속한 조치가 특별히 요구되지 않는 영상정보처리기기에 대하여는 해당부서 및 기관과 협의를 통하여 그러하지 않을 수 있다.

1. 기존에 운영 중인 목적별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시간 외의 야간 및 주말에는 방법 등 공익목적으로 관제할 수 있다.
2. 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 공공기관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 제4조, 제5조 참조

제18조(관제요원의 근무) ①관제요원의 근무는 실시간 관제가 가능하도록 배치하고, 교대근무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내부 환경에 따라 탄력적으로 근무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②근무조건 등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관계 법률이 정한 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관제요원이 근무 중 영상정보처리기기로 범죄·사고·재난·재해 등을 발견한 경우, 해당기관 및 업무부서에 신속히 통보하여 대응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1. 관제요원의 근무방식은 4개조 3교대 근무를 기준으로 하며, 비상상황 발생 시 통합관제센터장의 책임 하에 처리상황 등을 경찰서(112 지령실), 재난상황실 등 유관기관에 신속하게 전파하여야 한다.
2. 관제요원의 인원과 근무시간은 자체 여건에 따라 조정 가능하다. 다만, 근로조건 등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3. 통합관제센터장은 관제요원의 직무태만 및 직무위반 등 문제 야기 시, 해당기관의 장에게 위반사실을 통보 하여야 한다.
4. 관제요원은 방법, 교통, 환경, 재난, 재해 등 각 기능별 영상정보처리기기에 대한 실시간 관제업무를 수행 한다.

통합관제센터 근무자 수칙

□ 보안 관리

- 영상정보보호 등 보안유지를 위해 출입통제(제한)구역으로 설정 관리
- 외부인 출입에 대한 「출입통제(제한)구역 출입자 명부」를 비치, 방문자, 방문 일시, 방문 목적, 연락처 등을 반드시 기록 유지
- 외부인 출입 시 카메라(휴대폰 등) 촬영을 통제하고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영상자료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 철저
- 영상정보를 관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영상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에 사용 금지
- 센터 내 모든 근무자 및 상시 출입자는 반드시 보안 서약서를 작성하여 제출

□ 상황 처리

- 모니터링 중 사건·사고 등의 상황 발견 시
 - 상황보고(모니터링 요원) → 상황파악 및 유지(경찰/모니터링요원) → 상황전파(유·무선 등) → 기록 유지 → 처리결과 보고
- 비상벨 작동 감지 시
 - 상황파악(경찰/모니터링 요원) 및 전파(유·무선 등) → 기록 유지 → 처리결과 보고

□ 비상연락망 정비 철저

- 모든 근무자에 대한 비상연락망 상시 점검 및 유지

제19조(출입자 통제 등)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통합관제센터를 운영하는 경우 이를 출입통제(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업무담당자 외의 출입을 엄격히 관리하여야 한다.

②업무담당자 외에 통합관제센터를 방문·출입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근무자의 근무 교대 시 근무자 및 방문 출입자에 대한 보안검색을 실시하여 영상정보 자료가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④일반인이 견학 등 목적으로 통합관제센터를 방문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적절한 보안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통합관제센터를 출입통제(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업무담당자 외의 출입을 엄격히 제한하여야 한다.

2. 통합관제센터는 신원확인을 위한 자동문, 지문인식, ID 카드설비 등 출입통제(제한) 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3. 통합관제센터를 방문·출입하는 외부인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 다만, 정기적인 업무로 방문하는 외부인은 통합관제센터 장의 승인을 받고 출입할 수 있다.

가. 고정출입자 이외 출입자는 사전 허가를 득한 후, 센터에 비치된 출입자통제 대장에 성명, 방문일시 및 목적, 연락처를 기재하고 출입할 수 있다.

4. 총괄책임자는 근무자의 근무교대(종료) 시 교대근무자 및 방문 출입자에 대한 보안검색을 실시하여 촬영가능 기기의 유입을 금지하고, 별도의 물건 보관함을 비치하여 출입자의 소지품 관리를 행하고, 여타 자료 유출방지 등을 위한 보안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5. 통합관제센터 내에서는 촬영·녹음을 금지하고, 언론보도·방송 및 참고자료 목적으로 촬영 시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6. 일반인이 견학 등의 목적으로 통합관제센터를 방문할 경우에도 적절한 보안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가. 통합관제센터의 근무자 및 관계자 이외의 방문자는 보안서약 등을 통해 사전보안 수칙을 공지하여야 한다.

나. 근무자와 내방객 출입 동선의 물리적·공간적으로 분리하여야 한다.

다. 내방객임을 인식할 수 있는 출입증 등 부착하도록 한다.

제20조(다른 기관과 연계에 필요한 보안대책)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경찰서 등 다른 기관과 시스템 연계에 필요한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 경찰서, 소방방재청 등 유관기관과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시스템을 연결 시 전용회선이나 VPN 등을 설치하여 보안성 요건을 충족시켜야만 한다.

가. 통합관제센터와 유관기관은 전용회선 구축을 통해 보안성 요건을 충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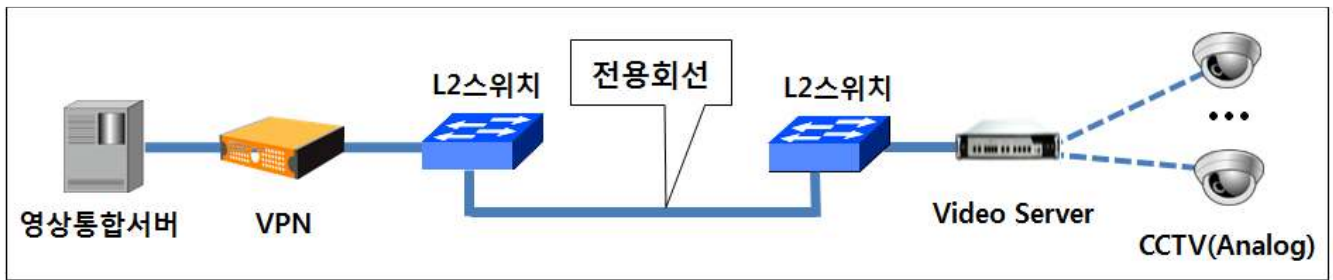
나. 인터넷 구간을 통한 영상정보 연계 시 VPN 등을 설치하여 보안성 요건을 충족

다. 방화벽을 두어 유관기관에서의 접속점에도 방어선 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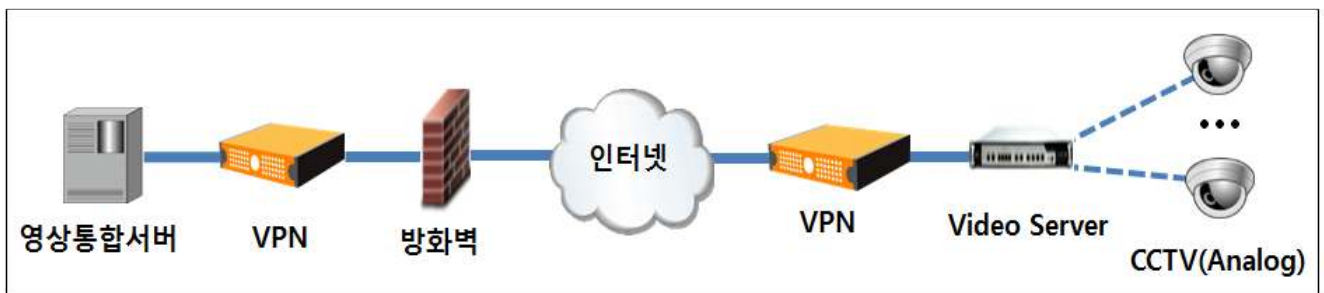
라. 유관기관과 접속점 양단에 각각 연계 서버를 두고, 해당 연계 서버는 스토리지를 Fiber Channel로 연결하여 TCP/IP 통신 접속점 제거 등

2. 영상 및 데이터를 암호·복호화하는 장치 또는 장비는 국가사이버안전센터 IT보안인증사무국으로부터 검증필을 받은 암호모듈 사용

< 전용회선을 이용한 보안구조 >



< VPN 이용한 보안구조 >



제22조(통합관제센터 운영업무 등의 위탁)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통합관제센터 관제 및 유지보수업무 등을 직접 수행하거나, 외부에 위탁할 수 있다. 다만 운영업무 전체는 위탁할 수 없다.

②제1항에 따라 통합관제센터의 관제 및 유지보수 업무 등을 위탁하려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추진하여야 한다.

법률근거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6조(공공기관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사무의 위탁)

① 법 제25조제8항 단서에 따라 공공기관이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문서로 하여야 한다.

1. 위탁하는 사무의 목적 및 범위
2. 재위탁 제한에 관한 사항
3. 영상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등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사항
4. 영상정보의 관리 현황 점검에 관한 사항
5. 위탁받는 자가 준수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의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제2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내판 등에 위탁받는 자의 명칭 및 연락처를 포함시켜야 한다.

1. 표준개인정보보호지침 및 고시 제47조 참조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관리·운영에 대한 점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현황 등을 파악하고, 표준 개인정보보호 지침 및 고시 제52조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에 대한 자체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1. 표준개인정보보호지침 및 고시 제52조 참조

제24조(교육의무)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통합관제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 및 관제요원에 대해(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제반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교육은 자체적으로 실시하거나 해당 분야의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1. 교육은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기술 교육 뿐만 아니라 영상정보 보호 및 관련 보안교육 등으로 구성하여 실시하여야 한다.